

# 남원용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

개정심의 2016. 4. 4.

전면개정 2021. 4.

일부개정 2023. 12.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본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, 유아교육법 시행 규칙에 의하여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본 유치원은 남원용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라 한다. (이하‘본원’이라 함)

**제3조(위치)** 본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용성로 29에 둔다.

## 제 2 장 교육연한, 학기 및 휴업일

**제4조(교육연한)** 본원의 교육연한은 1년~3년으로 한다. 단 취학유예자인 경우 연장할 수 있다.

**제5조(학기)** 본원의 학기는 두 학기로 나누어 운영한다.

1. 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,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 날까지로 한다.

2.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### 제6조 (휴업일)

1. 본원의 휴업일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되, 관공서의 공휴일 및 토요일, 개교기념일, 여름·겨울방학, 학년말방학, 재량휴업일을 포함한다.

2. 원장은 비상재해, 유행성 전염병, 기타 긴박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제 3 장 학급편제 및 유아정원

**제7조(학급편제)** 본원은 1학급으로 구성하되 3,4,5세 혼합연령으로 편성한다.

**제8조(유아정원)** 본원의 유아 정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유치원 학급편성기준에 따른다.

## 제 4 장 교육내용 및 교육일수

**제9조(교육과정)** 본원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유치원 교육과정에 따른다.

### 제10조(수업일수)

-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본원의 수업일수는 180일 이상으로 하며, 그 외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지침에 따른다.
-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고 30일 이내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한다.

**제11조(교육시간)** 본원의 하루 교육시간은 4~5시간 이내 기준으로 하되 학부모의 요구와 지역 실정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을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.

## 제 5 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유아 생활지도

**제12조(목적)**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14조 제2항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13조(적용)** 유치원 생활지도의 기준은 「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」를 따른다.

**제14조(생활지도의 범위)**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.

-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
- 유치원의 학급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·사용
-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
-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
-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
-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
-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
- 유아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
-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
- 그 밖에 원장과 교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 사항

### 제15조 (훈육)

- 원장과 교원은 유아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·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유아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.
- 원장과 교원은 유아가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유아를 분리할 수 있다.
  - 교육을 실시하고 교실 내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.

- 나. 1호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지속적으로 교육활동 방해 시 교실 외 지정된 다른 장소(교무실 또는 원장실)로 분리한다.
  - 다.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유아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원장과 교원은 보호자에게 알린다.
2. 원장과 교원은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.
- 가.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
  - 나.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
  - 다. 녹음기 등 개인정보 공개의 우려가 있는 물품
  - 라.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는 물품

**제16조(기타)** 그 밖의 생활지도에 관하여는 「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」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지침에 따른다. (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[시행 2023.9.1] [교육부고시 제 2023-30호, 2023. 9. 1., 제정.] 이 근거로 인하여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.)

## 제 6 장 입학·재입학/편입학/전입학·휴학·전출·자퇴/퇴학· 수료 및 졸업

### 제17조(입학)

- 1.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아는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한다.
- 2. 신입 유아는 당해 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유아모집·선발계획에 따라 유치원입학관리 시스템을 통해 선발한다.
- 3. 입학 시기는 연중으로 하며 학급당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중도입학이 가능하다.
- 4. 본원에 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재입학/편입학/전입학)** 본원으로 재입학, 편입학,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유치원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.

### 제19조(휴학)

- 1.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휴학을 희망할 경우 원장은 휴원서를 받아 일정 기간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.
- 2. 휴학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,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할 수 있다. 휴학 기간이 종료되면 복학 처리하여야 한다.

### 제20조(전출)

- 1. 유아가 주소지 이전 등의 사유로 전출하고자 할 때 원장은 이를 허가 한다.
- 2. 전학서류 송부 요청이 있을 시 전출한 유치원으로 '유치원생활기록' 작성 및 관리 지침'에 의해 1주일 내로 송부한다. 다만, 공·사립유치원 외 전학서류 송부는 제한한다.

## **제21조(자퇴/퇴학)**

1. 개인 사정으로 자퇴를 희망할 경우 자퇴원서를 받아 처리한다.
2. 유아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때 원장은 퇴학을 명할 수 있다.
  - 가.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무단으로 장기 결석한 경우
  - 나. 질병 및 기타의 사유로 본인 및 타 유아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  - 다.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방해활동을 하는 보호자로 인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된 가정의 자녀

## **제22조(수료 및 졸업)**

1. 원장은 유아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3,4세 유아에게 수료장을, 5세 유아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.
2. 수료 및 졸업에 해당하는 출석일수는 유치원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.
3. 다만, 학년도 시작 이후 입학하여 유치원 수업일수 최종일까지 수료 및 졸업 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, 원장은 교직원 협의회를 거쳐 해당 유아의 수료 및 졸업을 처리한다.

## **제 7 장 시 상**

**제23조(시상)** 원장 및 교사는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유아에게 시상할 수 있다.

## **제 8 장 학부모 부담 경비**

**제24조(학부모 부담 경비)**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에게 징수할 수 있다.

## **제 9 장 규칙 개정**

**제25조(규칙개정)**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본원 교직원 협의 후 개정 내용을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공시한다.

## **부 칙**

1. 본 규칙은 2023년 12월 00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칙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칙은 교직원 협의를 통하여 원장이 이를 정한다.